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개편방안*

최세균** 조덕래*** 황윤재****

Keywords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 관세(tariff), 품목분류(commodity classification), 시장개방(market opening)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adjustment of commodity classification for Korean tariff schedule. Korea needs to develop a more specified Harmonized Tariff System considering the level of processing, species, and the contents of raw materials. For example, rice needs to be specified considering variety(short, medium, and long), and the level of processing, parboiled, milled or husked, broken, etc. Different tariff rates should also be provided considering the contents of raw materials and the level of processing as well as price differences from variety differences. Problems are often from the classification of the “others” category which includes anything other than classified specifically. There are too many items included in the “others” category for the harmonized system of Korea (HSK) without scientific or logical evidences. The authorities in charge of international tariff specification and the Korean government need to discuss the possibilities of providing new HS codes for newly emerging traded goods such as genetically modified products and new variety products.

* 이 논문은 2006년에 발간된 「농산물 관세 품목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요약·보완한 것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진주산업대학교 교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차례

- | | |
|-----------------------|-------------------|
| 1. 서론 | 4. 농산물 품목분류 개편 방안 |
| 2. HS 협약의 배경 및 내용 | 5. 결론 |
| 3. 주요 농산물의 품목분류 국제 비교 | |

1. 서론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의한 다자간 시장개방 협상, 그리고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등으로 국내 농산물 시장은 급속한 시장개방에 직면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Uruguay Round; UR) 협상에서 농업부문의 비관세장벽은 관세화를 통해 대부분 철폐되었다. 수입금지, 수입허가, 수입쿼터 등 직접적인 수입규제로부터 관세에 의한 가격 기능 또는 시장기능에 의존하는 간접적인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관세의 수입규제 또는 시장보호 기능은 UR 이전보다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체계는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효과적으로 시장을 보호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현행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에 따른 농산물 분류가 시장개방 확산에 따른 농산물 수입 증대와 시장개방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에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예, 최세균 외 1998, 최세균 외 2002, 최세균 외 2006, 이정환 외 2007, 임정빈 외 2008 등).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의 농산물 품목분류는 단순하여 적절한 관세의 부과, 통계 작성 및 유통 과정 파악 및 이를 통한 시장보호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정환 외(2007)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가 품목별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세부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정환 외(2007)는 낙농품에 국한하여 품목분류 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곡물, 육류, 과일, 채소, 특용작물 등 중요한 농산물을 가운데 대표적인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체계 개편 방향을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품목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품목을 우회적으로 수입하여 관세를 회피하고 산업에 피해를 입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고추(HS 0904201000: 건조고추, HS 0904202000: 고추가루, HS 0709602000: 신선 및 냉장 고추)는 우리나라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UR 협상에서 관세율 상한을 설정하여 300%의 높은 관세로 양허된 품목이다. 300%의 관세는 UR 협상 결과에 따라 10년간 10% 감축되어 2004

년도 관세율은 270%가 되었다. 그러나 냉동고추는 기타 냉동채소로 분류되어 2004년도 관세율은 27%에 불과하다(2003년부터 관세율 코드가 0710807000로 부여되었으나 수입 증가와 부정유통의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인 2002년까지는 별도의 코드 없이 0710809000의 기타냉동채소로 분류되었음). 따라서 많은 물량의 냉동고추가 중국에서 수입되어 고추 주산지에서 해동 후 다시 건조되어 주산지 상표로 부정 유통됨으로써 우리나라 농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는 관세를 양허할 당시 냉동고추를 기타냉동채소에서 분류하여 고추와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였다면 예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욱(2005)은 냉동고추의 통관기준을 명확히 하여 건고추가 혼합된 냉동고추를 건고추로 분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쌀의 품목분류 번호는 1006이다. 쌀의 관세율은 기본관세만이 정해져 있고 양허관세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만약 쌀의 양허관세가 정해진다면 수백%에 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쌀은 곡물조제품인 1904류의 쌀 조제품(코코아 미포함)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어(HS 1904901000) 양허관세율이 60%(UR 이행으로 2004년부터 54%로 감축됨)로 낮게 설정되었다. 그 결과 쌀과 다르게 수입이 자유화되었다. 수입 전쌀의 유통은 우리나라 쌀 산업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현상은 기본적으로 품목분류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쌀 조제품(코코아 미포함)으로 모호하게 분류된 상태에서 어떠한 형태의 쌀이 수입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쌀의 수입이 증가하자 정부는 2007년부터 전쌀을 별도로 분류하였으나(1904901010) 이미 낮은 관세율로 시장은 개방된 다음에야 취해진 조치이다.

국내 원유수급 불균형으로 분유 채고가 누적되어 낙농가와 유가공업체가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혼합분유 수입량이 수만 톤을 넘고 있다. 혼합분유 수입 증가가 국내 원유수급 불균형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탈지분유(0402101010)와 전지분유(0402211000)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176%인데 비해 혼합분유(0409901000, 1901902010 등)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3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분유에 유장분말 등을 혼합하여 낮은 세율로 수입한 뒤 다시 분유 성분으로 분류하여 사용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혼합분유를 모조분유라고 부르는 이유 가운데 하나임). 이러한 문제는 품목분류를 분유 포함비율별로 세분화하고 분유 함량 비율과 분유의 관세율을 고려하여 관세율을 책정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이정환 외(2007)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제품의 성분 비중이 품목분류에 반영된, 보다 세분화된 분류를 제안한 바 있다.

우리나라 농산물 품목분류의 한계는 한-미 FTA 협상에서도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에서 기존의 HS 품목분류표에 새로운 품목을 추가로 분류

해 넣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경험한 바 있다. 예를 들면, 품종 구분(후지사과, 동양배, 과일주스 기타) 용도 구분(유장, 감자, 대두), 혼합 정도 구분(혼합조미료) 등의 방식으로 품목을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익을 반영시킬 수 있었다. 신선 상태의 사과와 배는 하나씩 밖에 분류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후지사과와 동양배를 따로 분류하여 관세철폐 기간을 길게 설정하였다. 그러나 품목분류가 정교하게 이루어져 있었다면 그 밖의 품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품목분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발생하는 이러한 사례는 기술(유통, 가공 관련 기술 등)과 운송·통신의 발달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증가하는 우회수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농산물 품목분류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품목분류 개편은 다가오는 WTO의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과 FTA 협상 등에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상품분류는 상품을 생산, 유통, 소비 측면에서 파악이 용이하도록 구분하여 관세, 무역통계, 국제 교역의 원활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수입국은 특정 상품의 수입에 있어서 관세 부과 목적에 맞는 적절한 관세를 부과하고 통관된 수입품의 통계 및 유통 과정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품목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장개방에 대응한 국경보호조치로 품목분류 체계의 정비도 관세율 못지않게 중요하다. 품목분류는 관세회피 방지, 시장개방 협상에서 효과적인 이해관계 반영, 수출입 통계 작성, 적절한 관세부과 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농산물 품목분류 현황과 문제점을 주요 통상협상 대상국과 비교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품목의 품목분류 체계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HS 협약의 배경 및 내용

2.1. HS 협약의 배경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발전하는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상품의 종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천연상품부터 첨단기술제품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상품의 종류가 있다. 수많은 상품을 유통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하려면 분류기준을 설정한 다음 유형별 상품분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상품분류란 상품을 소재, 생산, 유통, 소비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도록 류(類)와 종(種)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

나의 상품군과 다른 상품군 사이의 차이에 따라 종류별로 구분하고 각 상품군별로 일정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상품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는 것을 말한다.

품목을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은 관세부과 업무나 통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비록 관세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관세를 환급하거나 수출통관 등의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정확한 품목분류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가 간에 통일된 상품분류표를 사용하면 국제무역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제무역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국제적인 통일 관세율표 작성에 관해 논의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회의는 1853년에 개최된 브뤼셀회의였다. 이후 1927년에 국제연맹이 주관하여 개최한 세계경제협력회의에서 국제관세율표에 대한 기본골격을 제시하였고, 이것을 토대로 하여 1931년에 관세율표 초안인 제네바 상품분류표를 제정하였다. 제네바 상품분류표는 표준국제무역분류표(SITC), 관세협력이사회 품목표(CCCN: 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등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모체가 되었다. 국제연맹이 1938년에 발간한 국제무역통계를 위한 최소목록은 제네바 상품분류표를 참고한 것이고, 이것이 SITC 제정의 기초가 되었다. 유럽 관세동맹연구단이 1948년에 제정한 브뤼셀 관세품목표도 제네바 상품분류표를 기초로 한 것이다. 브뤼셀 관세품목표는 1976년 6월에 개최된 관세협력이사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관세협력이사회 품목표(CCCN)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것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가 시행된 1988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다수 국가에서 사용되었다.

2.2. HS 협약의 주요 내용

HS 협약의 목적은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기술 및 국제무역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며, 상품명 및 코드 변화가 광범위하게 연계되도록 상품분류체계를 통일하는 데 있다. HS 협약은 전문, 본문 20개조 및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HS 협약 제3조에 의하면 HS 협약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체약국에 대해 협약이 발효되는 날부터 자국에서 사용하는 관세율표 및 수출입 통계분류표를 HS 품목표와 일치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HS의 호(heading)와 소호(sub-heading)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 없이 관련 코드번호와 함께 사용해야 하며, ② HS 해석에 관한 통칙과 부, 류 및 소호의 주(notes) 적용과 부, 류, 및 호 또는 소호 범위의 변경을 금지해야 하고, ③ HS의 번호 순서를 준수하며, ④ 수출입 무역통계를 공개해야 한다. 무역

통계의 경우 HS 6단위 수준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6단위 이상은 자발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상업적인 비밀이나 국가안보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각 체약국은 HS를 국내법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6단위 수준을 초과해서(7단위부터 10단위까지) 세분류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기본구조는 부-류-절-호-소호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품목분류의 원칙을 규정한 HS 해석에 관한 통칙과 주가 설정되어 있다. 부와 류의 표제는 참조 목적으로 설정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HS의 3대 구성요소인 통칙, 주 및 호·소호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무역 대상 품목의 분류방법은 부로 대분류한 다음 류로 중분류하고 있으며, 류는 호로 소분류하고, 각 호는 소호로 세분류하고 있다.

HS 품목번호의 표시방법은 6단위의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세계 공통단위이다.¹ 6단위 숫자 중 앞의 두 단위는 류를 나타내고, 그 다음 두 단위는 호를 나타내며, 마지막 두 단위는 소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HS 품목번호가 081340이라면 제8류(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13호(건조한 과실)의 40소호(건조한 기타 과실)에 속하는 품목이다.²

HS 품목분류는 원재료로부터 시작하여 가공정도가 높아지는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농·수·임산물, 광물 및 화공약품, 경공업 제품, 기계·전기기기, 전자·정밀기구, 잡품 및 미술품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예를 들면, 산 동물인 소는 제1류에 분류되어 있고 소의 가공제품인 소가죽은 제41류에 분류되어 있으며, 가공도가 더 높은 가죽 신발류는 제64류에 분류되어 있다. 류 내에서도 가공정도 순으로 품목을 배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신선한 감은 제8류의 10호 90소호(081090)에 분류되어 있는데 건조 감은 081340에 분류되어 있다.

농림수산물에 대한 HS 분류체계는 총 21부 중 4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것을 24개의 류로 중분류하고, 201개의 호로 소분류한 다음 725개의 소호로 세분류하고 있다.³

¹ 각 나라는 자국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7단위부터 10단위까지 네 단위의 통계부호(혹은 부호)를 설정하여 세세분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소호를 10단위까지 세세분류하여 사용하고 있다.

² 각 국은 081340 아래 4단위의 숫자를 건조한 기타 과실을 부호로서 세세분류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기타 건조 과실(081340)은 건조 감(1813401000)과 건조 대추(0813402000)로 세세분류하고 있다.

³ WTO 협상이나 FTA 협상 등에서는 농림수산물의 범위를 협상의 성격에 따라 합의에 의해 달리 규정하기도 한다. 국제 협상에서 농림수산물의 범위는 24류를 벗어난 것도 있다(예, 양모, 면사, 모피, 가죽제품 등).

부의 주는 4개이며 류의 주와 소호의 주는 각각 65개, 12개로 구성되어 있다. 농림수산물
의 대분류 4개 부 중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하고 있는 제2부의 소호 수가 265개로 가
장 많다. 그 다음으로 많은 소호 비중을 차지하는 부는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을
포함하는 제1부와 가공식품류를 분류하는 제4부로서 각각 219개, 195개의 소호로 구성
되어 있다. 동물성 유지 관련 품목을 분류하고 있는 제3부의 소호 수는 4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농림수산물 HS 분류체계

형식별 품목분류항의 수					주의 수		
부	류	절	호	소호	부의 주	류의 주	소호 주
제1부	제1류~제5류	0	44	219	2	12	2
제2부	제6류~제14류	0	79	265	1	26	2
제3부	제15류	0	21	46	0	4	1
제4부	제16류~제24류	0	57	195	1	23	7
계	24개	0	201	725	4	65	12

자료 : 한국관세무역연구원에서 발간한 「관세율표(2004)」로부터 집계한 것임.

제1류부터 제5류까지 5개의 류로 중분류되어 있는 제1부에는 산동물, 육류, 어패류,
낙농품 등의 산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이 배열되어 있으며 9개의 류로 중분류된 제2부
에는 채소, 과일, 곡물 등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되어 있다. 별도로 중분류하지 않은
제3부에는 동물성 유지 관련제품이 배열되어 있으며, 9개의 류로 중분류되어 있는 제4
부에는 가공식품류, 담배 등의 관련제품이 포함되어 있다.

제1부부터 제3부까지는 용도, 종류, 가공상태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4부
중 가공식품류(제16류부터 제21류까지)는 가공상태, 원재료의 종류, 성분 등을 기준으
로 분류하고 있다. 음료 및 주류(제22류)의 경우 품목분류 기준 요소로서 제법, 주정도
수, 성분 등을 채택하였다. 식품공업 잔재물 및 담배(제23류부터 제24류까지)는 원재
료, 가공도, 용도 등을 품목분류상의 주요 요소로 이용하고 있다.

2.3. HS 분류 수정의 제도적 근거

경제·사회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품목분류체계의 변경 필요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존 상품이 소멸되는 경우 그 상품의 품목번호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기술개발로 새로운 상품이 개발된다면 별도의 품목분류가 요구될 수도 있을 것이다.

품목분류의 수정 대상, 수정 사유 및 수정 주체는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 등)의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품목분류의 수정 대상에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또는 관세법 제73조(국제협력관세) 및 제76조(일반특혜관세의 적용기준)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가 포함된다(관세법 제84조).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외에도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및 특정 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 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해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수 있다.

품목분류의 수정 사유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 이사회(WCO)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품목분류표 수정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세율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⁴ 세율 변경이 없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수정 주체가 되며,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하게 된다. 수정 사유 중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HS협약 제16조 제4항에 규정한 기한 내에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표 2. 품목분류 수정의 제도적 근거

	내 용	법 조항
수정 사유	① HS 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②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어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84조,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수정 대상	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② 관세법 제73조 및 제76조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및 특정 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	관세법 제84조,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수정 주체	재정경제부장관(세율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반영 의무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으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HS 협약이 정한 기한 내에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에 이를 반영해야 함.	HS 협약 제16조 제4항 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자료: 한국관세무역연구원, 『관세법령집』, 2005.

⁴ 세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개정절차를 거친 다음 품목분류를 변경해야 한다. 세율은 입법사항이므로 행정기관에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변경하려면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 고시해야 한다.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제1항⁵⁾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해야 하며, 고시한 기준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관세법 시행령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제1항).

재정경제부장관이 능동적으로 관세청장에게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변경토록 할 수 있다. 이것의 법적 근거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약의 이행 또는 법 별표 관세율표의 시행과 관련하여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이다.

3. 주요 농산물의 품목분류 국제 비교

우리나라의 농산물 품목분류를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 분석한 결과 세분화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요 통상협상 대상 9개 국가(미국, 멕시코, 캐나다, MERCOSUR, EU, 인도, 일본, 중국, 태국)를 분석한 결과 미국, 캐나다, EU의 농산물 품목분류 수가 2,000개 이상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품목분류는 분석대상국가 10개국 평균(1,848개)에도 못 미치는 1,452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최세균 외 2006).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국 평균보다 현저하게 품목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지 못한 분야는 축산물(HS 4류), 과실류(HS 8류), 차와 향신료 등(HS 9류), 곡물(HS 10류), 육/어류 조제품(HS 16류), 과소·과실 조제품(HS 20류), 음료 및 주류(HS 22류) 등이다. 곡물, 축산물, 과실, 채소 그리고 이들 가공품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주요 농산물의 품목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품목분류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분석 대상 국가 가운데 바람직한 분류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품목류별로 대표적인 품목만을 비교하였으나 다른 품목의

⁵ 관세법 제85조 제1항에서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시사점이 큰 품목으로 곡물류 가운데 쌀, 축산물 가운데 쇠고기와 낙농품, 과일류 가운데 사과와 배, 채소류 가운데 파와 마늘을 분석하였다.

3.1. 쌀

쌀(1006호)은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개방 협상에서 관세철폐 예외로 취급할 만큼 민감한 품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쌀을 그 중요도에 비해 HS 코드 품목분류에서 매우 단순하게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HS 10단위 코드에서 쌀을 그 종류와 도정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6개의 세부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쌀 관련 품목의 분류는 벼, 메현미, 찰현미, 멥쌀, 찰쌀, 쉼미 등이다.

주요 분석 대상국 가운데 쌀을 가장 이상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국가는 EU로 나타났다. EU는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 많은 HS 코드를 보유하고 있다. EU는 HS 8단위 기준으로 쌀을 도정 정도(예; 벼, 현미, 반 도정미 등), 모양(예; 단립, 중립, 장립 등), 크기(예; 길이와 넓이의 비율 등), 용도 및 가공처리(예; 종자, 데친 것, 기타) 등의 기준을 고려하면서 34개 품목으로 세밀하게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우리나라의 쌀(1006호) 품목분류 현황

HS 코드	품목명
1006100000	벼
1006201000	메현미
1006202000	찰현미
1006301000	멥쌀
1006302000	찰쌀
1006400000	쉼미

자료: 농림부, ‘농축산물품목분류(HSK) 및 관세율,’ 2007.

표 4. EU의 쌀(1006호) 품목분류 현황

HS 코드		품목명
100610 벼	10061010	종자
	10061021	종자 외/데친 것/단립종
	10061023	/중립종
	10061025	/장립종/길이를 너비로 나눈 비율이 2이상 3이하의 것
	10061027	/길이를 너비로 나눈 비율이 3이상의 것
	10061092	/기타/단립종
	10061094	/중립종
	10061096	/장립종/길이를 너비로 나눈 비율이 2이상 3이하의 것
	10061098	/길이를 너비로 나눈 비율이 3이상의 것
100620 현미	10062011	데친 것/단립종
	10062013	/중립종
	10062015	/길이를 너비로 나눈 비율이 2이상 3이하의 것
	10062017	/길이를 너비로 나눈 비율이 3이상의 것
	10062092	기타/단립종
	10062094	/중립종
	10062096	/장립종/길이를 너비로 나눈 비율이 2이상 3이하의 것
	10062098	/길이를 너비로 나눈 비율이 3이상의 것
100630 백미 또는 준백미	10063021	준백미/데친 것/단립종
	10063023	/중립종
	10063025	/장립종/길이를 너비로 나눈 비율이 2이상 3이하의 것
	10063027	/길이를 너비로 나눈 비율이 3이상의 것
	10063042	/기타/단립종
	10063044	/중립종
	10063046	/장립종/길이를 너비로 나눈 비율이 2이상 3이하의 것
	10063048	/길이를 너비로 나눈 비율이 3이상의 것
	10063061	백미/데친 것/단립종
	10063063	/중립종
	10063065	/장립종/길이를 너비로 나눈 비율이 2이상 3이하의 것
	10063067	/길이를 너비로 나눈 비율이 3이상의 것
	10063092	/기타/단립종
	10063094	/중립종
	10063096	/장립종/길이를 너비로 나눈 비율이 2이상 3이하의 것
	10063098	/길이를 너비로 나눈 비율이 3이상의 것
100640쇄미	10064000	쇄미

자료: European Communitie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ustoms Tariff schedule,' 2004.

농림부, 한-EU FTA 협상용 자료, 2007(미발간 관세율표).

3.2. 쇠고기

쇠고기는 생산기반이 한번 무너지면 복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생산 농가, 생산액 면에서도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민감품목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HS 4단위 기준 품목 분류에서 쇠고기는 신선·냉장 쇠고기(0201호)와 냉동 쇠고기(0202호)로 분류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신선·냉장 쇠고기(0201호)와 냉동 쇠고기(0202호)를 각각 3개의 품목으로만 분류하고 있어 분석 대상국 중 가장 세분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캐나다는 신선·냉장 쇠고기(0201호)와 냉동 쇠고기(0202호)에 대해 각각 36개와 40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다.

HS 10단위 품목분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신선·냉장 쇠고기(0201호)와 냉동 쇠고기(0202호) 모두 절단방식과 뼈의 포함여부를 주요 기준(예; 도체와 이분도체, 뼈채로 절단한 것)으로 하여 단순하게 분류하고 있다. 캐나다는 절단 방식과 뼈의 포함여부는 물론 도축 대상 소의 연령(예; 송아지 고기), 부위 및 절단 방식(예; 갈비, 엉덩이, 허리, 전사반부, 후사반부, 가슴, 목/어깨, 옆구리 등), 시장접근물량 범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분류하고 있다.

표 5. 한국의 신선·냉장 쇠고기(0201호) 품목분류 현황

HS 코드	품목명
0201100000	도체와 이분도체
0201200000	기타의 것으로 뼈채로 절단한 것
0201300000	뼈 없는 것

자료: 표 3과 동일.

표 6. 한국의 냉동 쇠고기(0202호) 품목분류 현황

HS 코드	품목명
0202100000	도체와 이분도체
0202200000	기타의 것으로 뼈채로 절단한 것
0202300000	뼈 없는 것

자료: 표 3과 동일.

표 7. 캐나다의 신선·냉장 쇠고기(0201호) 품목분류 현황

HS 코드	품목명
0201101010	송아지/도체 및 이분도체/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이내
0201101090	소/도체 및 이분도체/송아지 제외/신선 또는 냉장/ 시장접근 이내
0201102010	송아지/도체 및 이분도체/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초과
0201102090	소/도체 및 이분도체/송아지 제외/신선 또는 냉장/ 시장접근 초과
0201201010	송아지 정육/뼈 포함/ 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이내
0201201020	소 정육/뼈 포함/가공/ 송아지 제외/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이내
0201201091	소 갈비/뼈 포함/가공 및 송아지 외/ 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이내
0201201092	소 엉덩이/뼈 포함/가공 및 송아지 제외/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이내
0201201093	소 허리/뼈 포함/가공 및 송아지 제외/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이내
0201201099	소 정육/뼈 포함/가공 및 송아지 제외/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이내
0201202010	송아지 정육/뼈 포함/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초과
0201202020	소 정육/뼈 포함/가공/송아지 제외/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초과
0201202091	소 갈비/뼈 포함/가공 및 송아지 외/ 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초과
0201202092	소 엉덩이/뼈 포함/가공 및 송아지 제외/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초과
0201202093	소 허리/뼈 포함/가공 및 송아지 제외/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초과
0201202099	소 정육/뼈 포함/가공 및 송아지 제외/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초과
0201301010	송아지/뼈 제거/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이내
0201301020	소 정육/뼈 제거/가공/송아지 제외/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이내
0201301030	소 전사반부/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이내
0201301040	소 후사반부/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이내
0201301091	소 가슴/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이내
0201301092	소 어깨/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이내
0201301093	소 갈비/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이내
0201301094	소 엉덩이/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이내
0201301095	소 허리/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이내
0201301099	소 정육/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이내
0201302010	송아지/뼈 제거/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초과
0201302020	소 정육/뼈 제거/가공/송아지 제외/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초과
0201302030	소 전사반부/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초과
0201302040	소 후사반부/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초과
0201302091	소 가슴/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초과
0201302092	소 어깨/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초과
0201302093	소 갈비/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초과
0201302094	소 엉덩이/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초과
0201302095	소 허리/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초과
0201302099	소 정육/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신선 또는 냉장/시장접근 초과

자료: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anadian Customs Tariff: Harmonized System,' 2004.

표 8. 캐나다의 냉동 쇠고기(0202호) 품목분류 현황

HS 코드	품목명
0202101010	송아지 도체 및 이분도체/냉동/시장접근 이내
0202101090	소 도체 및 이분도체/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이내
0202102010	송아지 도체 및 이분도체/냉동/시장접근 초과
0202102090	소 도체 및 이분도체/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초과
0202201010	송아지 정육/뼈 포함/냉동/시장접근 이내
0202201020	소 정육/뼈 포함/가공/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이내
0202201091	소 갈비/뼈 포함/가공 및 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이내
0202201092	소 엉덩이/뼈 포함/가공 및 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이내
0202201093	소 허리/뼈 포함/가공 및 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이내
0202201099	소 정육/뼈 포함/가공 및 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이내
0202202010	송아지 정육/뼈 포함/냉동/시장접근 초과
0202202020	소 정육/뼈 포함/가공/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초과
0202202091	소 갈비/뼈 포함/가공 및 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초과
0202202092	소 엉덩이/뼈 포함/가공 및 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초과
0202202093	소 허리/뼈 포함/가공 및 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초과
0202202099	소 정육/뼈 포함/가공 및 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초과
0202301010	송아지 정육/뼈 제거/냉동/시장접근 이내
0202301020	소 정육/뼈 제거/가공/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이내
0202301030	소 전사반부/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이내
0202301040	소 후사반부/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이내
0202301091	소 가슴/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이내
0202301092	소 어깨/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이내
0202301093	소 갈비/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이내
0202301094	소 옆구리/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이내
0202301095	소 눈, 넓적다리 살, outside flat과 허리윗부분/뼈 제거/냉동/시장접근 이내
0202301096	소 엉덩이/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이내
0202301097	소 허리/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이내
0202301099	소 정육/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이내
0202302010	송아지 정육/뼈 제거/냉동/시장접근 초과
0202302020	소 정육/뼈 제거/가공/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초과
0202302030	소 전사반부/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초과
0202302040	소 후사반부/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초과
0202302091	소 가슴/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초과
0202302092	소 어깨/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초과
0202302093	소 갈비/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초과
0202302094	소 옆구리/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초과
0202302095	소 눈, 넓적다리 살, outside flat과 허리윗부분/뼈 제거/냉동/시장접근 초과
0202302096	소 엉덩이/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초과
0202302097	소 허리/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초과
0202302099	소 정육/뼈 제거/가공 및 송아지 제외/냉동/시장접근 초과

자료: 표 7과 동일.

3.3. 낙농품

우리나라는 낙농품(4류) 가운데 일부 중요한 품목의 경우 품목분류가 단순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치즈와 커드(0406호)를 HS 10단위 수준에서 6개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은 치즈와 커드를 156개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치즈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분류하고 있는데 비해, 미국의 경우 치즈를 가공정도(신선, 가공, 형상 등)와 우유의 종류(소, 양 등), 우유 종류별 함량 등을 기준으로 세분하고 있다(예; blue-mold, cheddar, american, edam and gouda, italian, swiss, colby, swiss 등)(최세균 외 2006, PP 93~99 참조).

3.4. 사과·배

신선 과일은 사과, 배 등으로 단순하게 분류하기 쉬운 품목이다. 사과와 배는 같은 품목군(신선 사과·배 및 마르멜로, 0808호)에 속해 있다. 사과와 배는 우리나라 과일 가운데 민감성이 높은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HS 10단위 기준으로 3개 품목으로만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캐나다는 22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는 HS 10단위에서 품종(예; Empire, Golden Delicious, Gala, Granny Smith, Red Delicious, Mckintosh, Ida 등), 용도(가공용, 비가공용) 등을 고려하면서 보다 세밀하게 분류하고 있다.

표 9. 한국의 사과·배 및 마르멜로(0808호) 품목분류 현황

HS 코드	품목
0808100000	사과(신선)
0808201000	배(신선)
0808202000	마르멜로(신선)

자료: 표 3과 동일.

표 10. 캐나다의 사과·배 및 마르멜로(0808호) 품목분류 현황

HS 코드	품목명
0808101011	사과/Empire/신선/원상태/가공용
0808101012	사과/Golden Delicious/신선/가공용
0808101013	사과/Granny Smith/신선/원상태/가공용
0808101014	사과/Ida red/신선/원상태/가공용
0808101015	사과/Mckintosh/신선/원상태/가공용
0808101016	사과/Red Delicious/신선/원상태/가공용
0808101017	사과/Gala/신선/원상태/가공용
0808101019	사과/Gala/기타/신선/원상태/가공용
0808101091	사과/Empire/신선/원상태/가공용 외
0808101092	사과/Golden Delicious/신선/가공용 외
0808101093	사과/Granny Smith/신선/원상태/가공용 외
0808101094	사과/Ida red/신선/원상태/가공용 외
0808101095	사과/Mckintosh/신선/원상태/가공용 외
0808101096	사과/Red Delicious/신선/원상태/가공용 외
0808101097	사과/Gala/신선/원상태/가공용 외
0808101099	사과/Gala/기타/신선/원상태/가공용 외
0808109000	사과/신선/기타/원상태 외
0808201000	배/신선/가공용
0808202100	배/신선/가공용 외
0808202900	배/신선/기타
0808203000	퀸스(마르멜로의 열매)/신선

자료: 표 7과 동일.

3.5. 채소

우리나라의 주요 양념채소인 파·마늘류(0703호)는 마늘, 양파, 그리고 파를 포함한다. 파·마늘류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6개의 HS 코드만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캐나다(HS 10단위 기준으로 16개)의 세분화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형태이다. 우리나라가 마늘을 ‘탈피한 것(0703201000)’과 ‘기타(0703209000)’의 2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비해, 중국은 마늘의 줄기 부분도 포함하여 HS 8단위에서 보다 세밀하게 마늘 뿌리와 대부분 그리고 기타의 부분으로 나누고 있다. 양파와 쪽파(070310소호)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를 단순히 양파와 쪽파의 두 품목으로 나누어서 2개의 코드로 분류하고 있는데 비해, 캐나다는 9개의 코드로 분류하고 있다. 리크와 기타 파속의 채소(070390소호)의 경우 중국은 부추류(07039020)를 별도로 분류하여 8단위 HS 코드에서 3개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11. 한국의 파·마늘류(0703호) 품목분류 현황

HS 코드		세부 품목
070310 (양파와 쪽파)	0703101000	양파
	0703102000	쪽파
070320 (마늘)	0703201000	탈피한 것
	0703209000	기타
070390 (부추와 기타 파속의 채소)	0703901000	부추
	0703909000	기타

자료: 표 3과 동일

표 12. 캐나다의 파·마늘류(0703호) 품목분류 현황

HS 코드		품목명
070310 양파와 골파	0703101000	양파/신선 또는 냉장
	0703102100	양파/스페인 형/가공용/신선 또는 냉장
	0703102900	기타Other
	0703103100	양파 또는 골파/녹색/신선 또는 냉장(수입: specified by order of the Minister or the Deputy Minister, not exceeding a total of 22 weeks in any 12 month period ending 31st March)
	0703103200	양파 또는 골파/녹색/신선 또는 냉장(수입: specified by order of the Minister of National Revenue or the Deputy Minister of National Revenue, not exceeding a total of 22 weeks in any 12 month period ending 31st March)
	0703103300	양파 또는 골파/녹색/신선 또는 냉장/ o/t Mexico tariff (기타, 수입: specified by order of the Minister of National Revenue or the Deputy Minister of National Revenue, not exceeding a total of 22 weeks in any 12 month period ending 31)
	0703103900	기타
	0703104100	건조 골파
	0703104900	기타
	0703109100	기타/멕시코 산
	0703109200	기타/칠레 산
	0703109300	기타/칠레 외
	0703109900	기타
0703200000		마늘/신선 또는 냉장
070390	0703900010	부추/신선 또는 냉장
리크	0703900090	기타

자료: 표 7과 동일.

잎담배(2401호)의 경우 분석 대상국 중 미국이 가장 세분화가 잘 되어 있어 137개의 HS 코드를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1개의 HS 코드만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잎담배를 주로 종자(예; 황색종, 버어리종 등)와 주맥제거 유무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HS 8단위에서 종자와 주맥제거뿐만 아니라 품질(예; Wrapper tobacco)을 고려하고 있으며, 잎담배를 제외한 부산물도 출처(예; from cigar leaf, from oriental or turkish type 등)와 용도(예; for cigarette), 그리고 처리방법(예; cut, ground or pulverized)에 따라 자세히 분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HS 10 단위 코드에서는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최종적으로 137개의 품목으로 세분화하고 있다(최세균 외 2006, pp104~105 참조).

일부 품목의 경우 HS 코드를 1개로 분류하여 단순화 정도가 심각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천연꿀(0409호), 토마토(0702호), 오이(0707호)는 각각 1개씩의 HS 코드만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천연꿀, 오이, 토마토를 각각 5개, 7개, 12개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은 천연꿀의 경우 색깔(예; Amber or darker, White or lighter)에 따라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오이와 토마토도 파종시기, 재배방식, 품종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하고 있다.

표 13. 미국의 천연꿀(0409호) 품목분류 현황

HS 코드	품목명
0409000025	벌집, 소매용 포장
0409000042	백색 또는 옅은 색
0409000044	특히 옅은 황색
0409000062	옅은 황색
0409000064	황색 또는 짙은 색

자료: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 'Harmonized Tariff Schedules of the United States,' 2004.

표 14. 미국의 오이(0707호) 품목분류 현황

HS 코드	품목명
0707002000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수입된 것
0707004000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입된 것
07070050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입된 것
0707005010	온실재배
0707005090	기타
07070060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된 것
0707006010	온실재배
0707006090	기타

자료: 표 13과 동일.

표 15. 미국의 토마토(0702호) 품목분류 현황

HS 코드	품목명
07020020	3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또는 9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수입된 것
0702002010	온실재배/기타
0702002035	체리
0702002045	포도
0702002065	로마
0702002099	기타
07020040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수입된 것
0702004030	체리
0702004045	포도
0702004060	로마
0702004099	기타
07020060	11월 15일부터 2월말까지 수입된 것
0702006010	온실재배/기타
0702006035	체리
0702006045	포도
0702006065	로마
0702006099	기타

자료: 표 13과 동일.

이밖에도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절대적으로 단순한 품목으로는 포도주가 있다. 포도주(2204호)의 경우 가장 세분화된 EU는 94개 품목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8개 품목으로 분류하는 데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가 포도주를 단순히 색깔 위주(예; 붉은 포도주, 흰포도주 등)로 분류하고 있는데 비해, EU는 포도주의 색깔은 물론, 원산지, 알콜도수 등을 고려하여 자세히 분류하고 있다(최세균 외 2006, pp 106~107 참조).

4. 농산물 품목분류 개편 방안

우리나라의 농산물 품목분류는 주요 통상 대상국과 비교할 때 매우 단순하다. 이러한 품목분류의 단순함과 관세율 설정의 불합리성이 결합되어 관세회피를 위한 여러 가지 편법 수입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우회적 수입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농

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품목 분류의 단순함은 수입 농산물의 통관 및 유통, 통계 작성 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통상협상에서도 보호 대상과 개방 대상 품목 선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현행 품목분류를 보다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분류한 품목의 관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관세율 조정은 현행보다 낮게 조정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높게 조정하는 것은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으며, WTO 회원국 등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편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중요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품목분류 개편 방안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다루지 않은 품목들도 대부분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유사할 것이다.

4.1. 주요 품목별 분류체계 개편 방향

- ① 쌀: 품종, 가공정도를 고려하여 현재보다 세분화된 품목분류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쌀의 품종을 단립종, 중립종, 장립종으로 구분하여 현재의 멍쌀, 찰쌀에 적용하여야 한다. 가공정도는 도정 정도와 가열 및 분쇄 정도를 추가하여 품목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경우 EU나 태국 정도의 세분화된 분류가 가능하며, 교역 통계는 물론 관세의 적용 등에 있어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 ② 쇠고기: 송아지고기 소비가 많은 국가들은 이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송아지고기를 별도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송아지고기의 교역전망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도축부위별 분류는 추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많은 갈비살은 대표적으로 별도의 분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다. 그밖에 엉덩이, 허리, 어깨, 다리와 같이 부위별로 분류가 필요한 부분은 별도의 분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장이나 뼈도 부위별로 세분화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 ③ 낙농제품: 치즈 등 제품의 종류별로 가격 및 교역의 차이가 큰 낙농품은 품종별 분류가 필요하다. 분유 등 우유의 함량에 따라서도 품목분류를 다르게 설정하고 관세율은 원료의 함량 비율에 따라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낙농제품은 품목 수가 많고 제품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품목분류에 있어서 특별히

낙농 및 교역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 ④ 과일: 품종별 분류가 추가되어야 한다. 과일은 식물방역법에 의한 수입규제로 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어떠한 품종이 수입될 지 불확실하다. 그러나 수입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수입, 통관 및 유통과정의 추적이 가능하고 품종,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재분류하는 것이 요구된다. 텔리셔스 계통도 색상에 따라 분류되고 있으며, 갈라, 후지 등 여러 품종이 존재하고 있다. 품종에 따라 맛과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수입 가능성과 농업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관세율도 품종별로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 가공용과 식탁용 등 용도와 형태(원형 또는 절단 등 가공정도)도 품목분류 시 고려되어야 한다.
- ⑤ 채소 및 기타: 마늘의 경우 중국이 뿌리, 대, 기타 등 부위별로 품목분류를 다르게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류 방식은 다른 채소류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파, 양파, 토마토 등은 품종별로 세분화하고, 가공 정도를 고려하여 품목분류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편과정은 현재 ‘기타’라는 모호한 분류에 속하는 많은 품목을 축소시켜 수입관리 및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품목에 따라서는 수입시기와 재배방식(온실재배 등)도 품목분류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천연꿀은 색상과 밀원을 품목분류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담배와 포도주 등 가공품의 경우에도 품종, 용량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된 품목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4.2. 기타로 처리된 품목의 구체화

현재 우리나라의 농산물 중 관세품목분류표상 특정한 품목코드로 정해지지 않아 ‘기타’라는 품목으로 통합되어 분류되고 있는 품목이 많다. 신선 농산물이 기타로 분류될 경우 냉장, 냉동, 건조, 파쇄 등 단순 가공품도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신선 농산물 가운데에서도 기타로 처리된 것 가운데 교역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실품목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품목의 가공품도 실품목의 가공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타로 분류된 품목은 주로 채소류(07류)와 과실류(08류), 채소과실의 조제품(20류) 등에 많다. 이러한 품목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기타 채소(신선/냉장), 기타 채소(냉

동), 기타 채소(건조), 기타 채소(일시저장처리), 기타 버섯(건조), 기타 버섯(신선/냉장), 기타 과실(건조), 기타 과실(신선), 기타 곡물, 기타 곡분 등이 있다. 냉동고추가 냉동채소의 일부로 분류된 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와 같다. 독립된 HS 세번을 부여하더라도 관세율의 변화가 없을 수 있으나, 주요 품목의 경우 향후 시장개방 협상에서 관세율 감축/철폐의 차등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민감품목을 중심으로 시급히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4.3. 함량 및 용도에 따른 품목 세분화 및 관세율 조정

혼합분유 수입 증가가 국내 원유수급 불균형의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탈지분유와 전지분유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176%임에 비해 조제분유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3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분유에 유장분말 등을 혼합하여 낮은 세율로 수입한 뒤 다시 분유 성분으로 분류하여 사용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관세율 코드를 세분화하고 포함된 성분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정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다. 함유량 또는 성분별로 구간을 설정하여 품목을 분류하고 관세율을 원료 함유량 또는 성분별로 차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는 유럽연합(EU)이 가장 세분화된 기준과 품목분류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EU,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또는 이러한 현상의 발생 빈도가 높은 낙농품, 설탕 등의 품목분류와 관세율 적용 국가의 예를 참조하여 품목분류와 관세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원료의 함량이 많을수록 원료 농산물에 가까운 관세율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관세회피 등 우회적 수입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치즈에 사용된 우유의 종류 및 그 함량에 따라 가격 및 품질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에 따라 품목을 세분화한 캐나다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식용, 가공용 등 용도의 차이도 품목분류에 반영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FTA 협상에서 감자와 대두를 식용과 가공용으로 구분하여 양허에 차등을 두었으나, 실제로 우리나라 품목분류는 이러한 구분이 없어 새롭게 분류를 추가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던 점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5. 결론

경제가 발전하는 추세 속에서 상품의 종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천연상품부터 첨단기술제품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상품의 종류가 있다. 이러한 상품을 국제 교역 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관리하려면 분류기준을 설정한 다음 유형별 상품분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품목을 명확하게 분류하는 것은 적정 관세부과, 통관 업무 효율화, 통계자료 작성, 유통과정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 협약에 따르면 HS 6단위까지는 공통적인 분류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7단위부터 10단위까지는 각국이 추가로 세분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나라가 HS 10단위까지 세분류된 HS 분류를 가지고 있으며, 실제 국제 교역은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HS 7단위 이하의 세분류가 세계적인 공통의 분류가 아니기 때문에 분류의 차이에서 품목분류의 기본 목적인 관세부과, 통관 업무 효율화, 통계자료 작성, 유통과정 파악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농산물의 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관세 부과와 관련된 문제가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농산물의 수입, 통관 및 관세부과,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우리나라 품목분류 체계는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품종, 용도, 가공도, 형상, 성분량, 축산물의 부위 등을 품목분류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품목의 세분화는 동일 품목 내에서도 품종별, 성분별, 제품 차이별로 가격차가 큰 품목에 대한 종량세(우리나라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일부 품목에 대해 종량세를 도입)의 효율적 운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품목분류 체계 개편 시에는 농업분야의 신기술 개발로 동일한 농산물이라도 기능성 농산물, 유전자변형 농산물, 유기 농산물 등 새로운 농산물 출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에는 국제적 교역이 미미할지라도 점차 교역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형태의 농산물이 출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한 관세 및 품목분류 체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현재 국제 교역이 증가하고 통상마찰 요인이 되고 있는 유전자조작 농산물(GMO)에 대하여는 전통적 농산물과 차별화가 요구된다.

참고 문헌

- 농림부. 2007. 「농축산물품목분류(HSK) 및 관세율」.
- 농림부. 2007. 한-EU FTA 협상용 자료(미발간 관세율표).
-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관세율표」.
-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2005년 관세법령집」.
- 이욱. 2005. “중국의 냉동고추 수출과 국내 영향.” 『CEO Focus』 제159호. 농협중앙회.
- 이정환 외. 2007. 「낙농유제품의 관세체계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낙농육우협회.
- 임정빈 외. 2008.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농산물 품목분류 및 관세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연구.” 『농업경영·정책연구』. 제35권 2호. 한국농업정책학회·한국축산경영학회.
- 최세균 외. 1998.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R38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외. 1998. “농산물 및 식품의 관세 체계 분석.” 농촌경제 제21권 4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외. 2002.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 비교 및 관세 감축효과 분석」. 연구보고 R44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외. 2006. 「농산물 관세 품목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농림부.
- Choi, S. K. et. al. 1998, “Effective Protection Rates of Food and 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Vol. 21(Winter).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2004. “Canadian Customs Tariff: Harmonized System.”
- European Communities. 2004.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ustoms Tariff schedule.”
-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 2004. “Harmonized Tariff Schedules of the United States.”

원고 접수일: 2008년 4월 7일 원고 심사일: 2008년 4월 23일 심사 완료일: 2008년 9월 17일
--